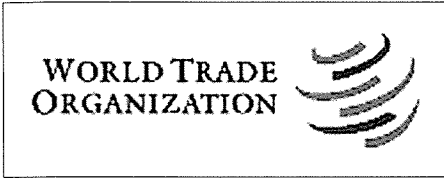


회보험에 관한 책임자 △선원의 사회보험에 있어 기국(Flag State)의 역할 △선원이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의 보증방법 △선

원의 사회보험에 관한 9개 항목 (branches)에 관한 규정방법(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직무상상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DA 해운서비스 협상

2004년도 WTO DDA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이해관계국 18개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운산업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방안에 대한 협상을 추진된다.

이번 협상분야는 국제해운, 해운보조, 항만서비스, 복합운송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해운산업의 지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2004년도에 5회(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게된다.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방안은 국적선사들의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만·중국·인도와 중남미 해운

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대만과는 일·대만항로 개방과 대만전력공사 입찰시 한국국적선 입찰

제한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도와는 조세부담이 없도록 한 인도간 해운회담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 주요 국가의 폐지대상 규제 >

국 가	해운·항만관련 주요규제	요구사항
미 국	○화물유보제도 - 군수물자 및 알라스카산 원유 100% - 대외지원 농산물 75%	폐지
중 국	○쌍무협정을 통한 시장접근 제한 ○외국선사의 현지법인 및 영업사무소의 설립규제 ○운임 및 해운거래신고 의무부과	폐지 또는 개선
일 본	○항만이용시 항만운송협의회와 사전 협의제	폐지
인 도	○화물유보제도 - 정기선사가 담당하는 화물의 40% - 원유 및 기초적인 원유부산물 100% ○Export CIF/Import FOB 정책 ○외국기업의 해운대리점 서비스에 대한 제한	폐지 또는 개선
대 만	○일·대만 항로의 한국국적선사 시장접근 제한 ○대만전력공사 등 국영기업 수송 입찰에 대한 한국적 선사 참여 제한	*
멕시코	○화물유보제도 - 일반화물 50%, 벌크화물 50%까지 국적선으로 운송	폐지
브라질	○국적선 적취제도 - 정부물자 수송시 국적으로 국적선 이용 불가시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선박으로 운송가능	*